

● 자금관리세칙(050104)

제정 2012. 2. 10. 세칙 제348호
개정 2018. 11. 8. 세칙 제490호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공사채의 발행 및 유희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사채”라 함은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차입금을 말한다.
2. “유희자금”이라 함은 자금수급계획상 수입 및 지출을 고려한 잉여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대출기관 및 운용기관 선정방법) ① 유희자금은 국채 또는 지방채를 취득하거나,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 등에 예입의 방법에 의한다.

② 대출기관 및 운용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. 단, 대출기관 공개경쟁입찰은 차입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대출가능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, 금융 환경의 악화 및 기타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 사장방침으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.

③ 운용기관 선정의 세부방법과 평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운용상품) ① 유희자금은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조건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.

② 운용목적,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금융상품의 운용은 정기예금,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, 환매조건부채권, MMDA 등으로 하며,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운용은 채권형 수익증권, MMF, MMT 등으로 하며 편입구성은 국채, 지방채, 특수채(AA+ 이상), 회사채(AAA), 기업어음(A1) 또는 이와 유사한 등급 이상의 채권으로 한다.

③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운용시 해당 상품에 편입된 자산현황(자산운용보고서)을 확인하여야 하며,

수익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사모간접투자기구 원칙으로 한다.

④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경우 사장방침을 통해 운용상품으로 추가 편입할 수 있다.

제5조(지정금융기관 운용) 자금의 입출규모 및 시기 등을 예측하기 용이하지 않은 수입금수납계좌, 대행사업계좌, 보조금계좌의 자금은 업무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, 예치상품의 약관 및 운용규모를 고려하고 지정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금리를 결정한다.

부 칙<11. 2. 10>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8. 11. 8>

이 세칙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